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일터

돌보는 일은 소중합니다 돌보는 사람은 더 소중합니다

동북어르신돌봄총사지원센터는
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구의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와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상담·프로그램·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동북 어르신돌봄총사자 지원센터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일터 (성희롱예방수첩)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피해는 특정한
요양보호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양보호 업무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요양보호사가
22.9%*이며 이용자와 보호자에 의해
경험한 경우가 **97%****입니다.

* 2021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서울시)
** 2020 요양보호사 성희롱 실태조사
(서울시 어르신돌봄총사자 종합지원센터)

돌봄현장 성희롱, 왜 문제일까요?

업무 중에 성(性)과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불쾌감과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일상생활까지 힘들게 만드는
성희롱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해치는 일입니다.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돌봄노동자들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의욕이 떨어지며,
직업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됩니다.

또한 일하는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안전하고 좋은 일터에서,
좋은 돌봄도 이루어집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와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1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2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성희롱 행위자가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사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장기요양 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희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신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②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無理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④ 기타 성희롱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함께 기억해주세요!!

행위자의 성적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인 이유로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구제절차에서는 **객관적 증거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예방은 서로 존중하는 태도 에서 시작됩니다

① 평소 '**요양보호사**'로 존중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업무시간 내에 업무범위 안에서 소통합니다.

② 보호자가 성희롱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 성희롱 행위 중단과 예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인지장애가 있어도 성희롱은 성희롱입니다.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인지력 유지를 돕듯, 상대를 존중하며 관계 맺는 방법을 잊지 않게 도울 수 있습니다.

④ 상대를 성희롱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성희롱 발생,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희롱 피해 발생 시, 이렇게 하세요!

①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 가해자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문제제기나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희롱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절의 뜻**을 표현합니다.
- 직접 말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렵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행위 중단을 요청하세요. 문자 등 글을 이용하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자료 남기기

- 사건이 일어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해결 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동료나 가족,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두는 것도 좋은 대처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보고하기

- 가해행위 입증을 위해 상황을 기록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사실을 장기요양기관에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④ 성희롱 상담기관과 상담하기

- 서울시 종합지원센터 성희롱 피해상담 전화 (☎1544-7315)로 연락하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방안 및 필요시 심리상담 지원, 성희롱피해와 관련된 노동청 진정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권리구제 지원연계**도 가능합니다.

⑤ 심한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경우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렇게 대처하세요



국가 인권위에서 제안하는 성희롱 발생시, 대응체계

-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확고한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
 - 신속한 사건처리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중단 등 가능한 조치를 합니다.
- 시간이 지체되면 행위자로부터 협박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 등을 상담하고 사실 관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합니다.
 - 기관 내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돌봄노동자가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또한, 정서적 지원을 통해 돌봄노동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돌봄노동자가 대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고, 다음 일자리가 바로 연계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상담기관	상담방법
서울시 동북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전화 02-981-9838 방문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5층
서울시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전화 1544-7315 방문 전화 예약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전화 02-706-5050
국민건강 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종사자고충상담 033-811-2282

서울지역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상담기관	상담방법
(사)한국성폭력 위기센터	전화 02-883-9284 방문 전화 예약 상담시간 10시~17시(평일)
(사)한국성폭력 상담소	전화 02-338-5801 방문 전화 예약 상담시간 10시~17시(평일)
(사)한국여성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전화 02-335-1858 방문 전화 예약 상담시간 10시~17시(평일)
여성긴급전화	전화 국번없이 1366 24시간

※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동북센터 주요사업

직무
교육

치매(인지)관리, 돌봄전문가,
사회복지사실무교육, 호스피스

건강
증진

근골격계질환예방교육, 힐링마사지
개별·집단 심리상담, 스트레칭, 요가

소모임
지원

글쓰기, 우쿨렐레, 칼림바, 라인댄스,
캘리그래피, 그림, 노래교실, 손뜨개

권익
옹호

노동법·산재·구직자 교육
노동·고충상담

인식
개선

좋은돌봄 문화 확산 캠페인
좋은돌봄 서울 한마당



동북센터(미아)

- 02-981-9838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172 남송빌딩 5층

회기센터(동대문)

- 02-960-0550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12 우산빌딩 5층